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의결안건 제219호 관련)

2021. 10. 15.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1년 10월 15일(금) 14:00~18:08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이 명 순 위 원

이 상 복 위 원

이 준 서 위 원

박 재 환 위 원

4. 회의경과

□ 의결안건 제219호 『(주)신한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주)신한은행의 법률대리인임.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검사국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실무상 문제되지 않았던 내용임에도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다는 점임. 과연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관련하여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엄밀히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조치예정내용의 요지부터 말씀드리겠음. 검사국은 3가지 점을 지적하였음. 첫 번째,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관련하여 ■■ ■■ 펀드 x호~x호 판매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집합투자규약을 교부하지 않은 점에 대해 과태료 73억 원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조치예정하고 있음. 두 번째, 파생결합증권 등 판매시 녹취의무 위반 관련하여 과태료 9억 1,000만 원을, 세 번째,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관련하여 과태료 4억 2,0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조치예정하고 있음. 다음 진술인 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관련해서는 집합투자규약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엄밀히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녹취의무 위반, 투자광고규정 위반 관련해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

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였음. 업무담당자의 업무상 착오에 비롯된 것으로 이러한 위반 동기 등을 감안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 ■■ 펀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관해 말씀드리겠음. 검사국은 집합투자규약을 설명서로 보고 집합투자규약을 교부하지 않은 것을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이는 판매사의 설명서 교부의무의 범위와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한 것이라 생각함. 가장 먼저 은행은 투자설명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상품제안서를 토대로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상품제안서를 고객에게 교부함으로써 설명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였음. 두 번째 쟁점으로 교부 측면에서 자본시장법 규정에 비추어 판매회사가 집합투자규약을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세 번째 쟁점으로 설명서 측면에서 집합투자규약을 자본시장법상 설명서로 볼 수도 없음. 네 번째로 은행은 설명서인 상품제안서를 교부하였음. 그럼에도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지적한 점은 부당하다고 생각됨. 마지막으로 검사국 지적은 운용사의 사후적 불법운용에 대한 책임을 판매회사에게 묻는 것으로 생각됨. 이하 위 순서대로 집합투자규약을 교부하지 않은 것을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은행은 상품제안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설명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설명서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등 투자설명사항이 기재된 문서임. 그리고 그러한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자본시장법령상 명칭을 불문하고 이러한 투자설명사항이 기재된 문서가 바로 설명서에 해당하는 것임. 상품제안서는 투자자에게 상품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제작된 문건으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설명사항이 그림, 도식 등을 통해 설명되고 있음. 자본시장법상 설명서로 볼 수 있는 것은 상품제안서임. 은행은 투자자에게 이러한 투자설명사항이 명시된 상품제안서를 교부하였음. 자본시장법령상 설명서인 상품제안서를 교부함으로써 설명서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임. 두 번째 쟁점으로는 자본시장법상 판매회사가 집합투자규약을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임. 자본시장법 제91조는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공모펀드의 경우 집합투자업자인 운용사에게 집합투자규약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판매회사에게 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나아가 사모펀드의 경우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운용사에 대해 그 공시의무마저 면제하고 있음. 이렇듯 자본시장법은 판매회사에게 집합투자규약에 대한 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에도 판매회사가 집합투자규약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전혀 별개의 규정을 들어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는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쟁점은 과연 집합투자규약을 자본시장법상 설명서로 볼 수 있는지 하는 것임. 집합투자규약은 운용사와 신탁업자 사이의 법률관계 규율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도 신탁재산 보관 관리, 운용지시 등 운용사와 신탁업자 사이의 법률관계 규율에 중점을 두고 있음. 반면 상품제안서는 애당초 작성 목적이 투자

자에게 해당 상품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임. 이러한 목적에 맞추어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할 투자대상, 주요전략 등 투자설명사항이 기재되어 있음. 집합투자규약은 운용사와 신탁업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로 운용사와 신탁업자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서임. 계약체결 주체도 운용사와 신탁업자임. 이에 그 주요내용도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업자에 대한 자산운용 지시, 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투자설명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음. 집합투자규약은 투자설명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할 목적으로 작성되는 설명서가 아닌 것임. 집합투자규약을 한 번 훑어보면 아실 수 있듯이 투자자에게 설명되어야 할 투자설명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투자구조와 내용, 운용전략, 투자위험,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투자설명사항 기재가 없음.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설명서가 아님. 자본시장법도 집합투자규약과 설명서를 구별하고 있음.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규약과 설명서를 구별해서 집합투자규약에 대해서는 운용사에게 공모펀드의 경우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사모펀드에서는 이를 면제하고 있음. 설명서에 대해서는 판매사에게 공모펀드이든 사모펀드이든 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렇듯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규약과 설명서를 구분하고 있고 그 의무대상자도 구분해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집합투자규약을 설명서로 보고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지적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체계와도 모순된다고 생각됨. 금융감독원 역시 집합투자규약과 설명자료를 구별하고 있음. 양자가 구별됨을 전제로 2020년 7월 행정지도를 하였

음. 그 내용을 보면 설명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집합투자규약과 설명자료의 정합성을 검증하도록 하고 있음. 즉, 설명자료는 투자자에게 상품을 설명하기 위해 투자전략, 투자위험 등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정보가 기재된 문건이고 이와 별개의 문서로 집합투자규약이 있는 것임. 이렇듯 집합투자규약과 설명서는 명확히 구별됨. 그런데 과연 집합투자규약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의문임.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으로 규정해서 명확하고 예측가능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는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법치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것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음. 설명서인 상품제안서를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규약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을 지적한 것은 유례가 없는 지적으로 보임. 검사국은 레버리지 사용가능성과 사모사채, 메자닌 등 투자가능성이 집합투자규약에는 있고 상품제안서에는 없으므로 상품제안서만 교부한 것은 설명서 미교부라고 지적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상품제안서에는 기재누락이 없고 ■■ ■■ 펀드에 대해 정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오히려 집합투자규약의 해당 부분이 ■■ ■■ 펀드의 내용보다 포괄적으로 기재된 것임. 그런데 설령 검사국 지적과 같이 상품제안서에 일부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상품제안서를 교부한 이상 설명서 교부 자체를 안 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됨. 검사국 주장에 따르면 집합투자규약과 상품제안서가 완벽하게 일치하면 집합투자규약은 설명서가 아니므로 상품제안서만 교부해도 된다는

결론이 되고, 양자가 불일치하면 집합투자규약도 설명서로 교부해야 한다는 결론이 됨. 즉, 검사국 주장에 따르면 집합투자규약이 그 내용에 따라 설명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이상한 결론이 되는 것임. 이는 검사국이 애초에 설명서가 아닌 집합투자규약을 설명서로 보다보니 초래된 불합리한 결과가 아닌가 싶음. 검사국의 지적은 운용사의 사후적 불법운영에 대한 책임을 판매회사에게 묻는 것으로 부당함. 집합투자규약은 전형적인 문구로 구성된 부동산자 형식으로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운용사는 그러한 집합투자규약의 범위 내에서 실제 운용전략을 정해 판매사에게 상품제안서를 제공함. 그리고 판매사는 상품제안서를 설명자료로 활용하고 투자자에게 교부함. 그런데 운용사가 그러한 약속을 어기고 상품제안서와 달리 운용한 것은 운용사의 불법운영에 해당하는 것임. 운용사가 제안서와 달리 운용한 것이 잘못임에도 이를 이유로 판매사가 집합투자규약을 이용해 설명했어야 한다는 것은 운용사의 사후적인 불법운영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부당함. ♣♣자산운용은 은행에 ■■ ■■ 펀드를 소개할 때부터 ■■ ■■ 펀드는 △△△ 매출채권에만 투자되고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상품이라고 일관되고 분명하게 직접 설명하였고 상품제안서에도 그렇게 기재되어 있음. 검사국은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사모사채, 메자닌 등 투자가능성을 설명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당함. ♣♣자산운용은 ■■ ■■ 펀드를 애초부터 ‘신용보험에 가입된 △△△ 매출채권’에만 투자하는 상품으로 설계하였음. 상품제안서 곳곳에 ‘신용보험에 가입된 △△△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임을 명시했고 펀드명

자체에서 투자대상 범위를 명시하였음. ♣♣자산운용은 상품소개시부터 동일하게 설명하였으며, 특히 검사국이 지적한 ■■ ■■ 펀드 x호~x호 판매 이후 ♣♣자산운용이 은행에 보내온 신탁자산명세서와 운용보고서에도 '신용보험에 가입된 △△△ 매출채권'에만 투자되어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이 사후적으로 다른 곳에, 그것도 이미 큰 손실이 발생한 ☆☆☆ TF펀드 등에 투자한 것은 명백한 운용사의 위법행위임. 검사국이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지적한 ■■ ■■ 펀드 x호~x호까지 판매된 이후 ♣♣자산운용이 7월에 보내온 신탁자산명세서와 8월에 보내온 운용보고서를 보면 모두 레버리지 없이 '신용보험에 가입된 △△△ 매출채권'에만 투자되어 있었음. ♣♣자산운용이 이처럼 ■■ ■■ 펀드는 '신용보험에 가입된 △△△ 매출채권'에만 투자하는 것으로 설계된 펀드로 이와 달리 사모사채 등에 투자하는 것은 운용사의 불법운용임. 검사국은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레버리지 사용가능성을 설명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려움. ♣♣자산운용은 애초부터 ■■ ■■ 펀드를 레버리지 사용 불가 상품으로 설계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이 사후에 불법적으로 레버리지를 사용한 것은 운용사의 위법행위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 ■■ 펀드 x호~x호까지 판매 이후 ♣♣자산운용이 보내온 신탁자산명세서와 운용보고서에도 레버리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 위험등급 관련해서 보면 금융감독원은 레버리지 상품을 1등급으로 분류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상품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운용사가 그 상품에 대한 위험등급을 부여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래서 이 ■

■■■ 펀드를 보면 운용사인 ♣♣자산운용은 투자위험 등급 3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그리고 ○○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위험등급표에도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상품은 1등급 상품임을 설명하고 있음. 이렇듯 ■■ ■■ 펀드는 운용사 스스로 위험등급 3등급을 부여한 상품으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위험등급 1등급 상품보다 2단계나 낮은 상품임. ♣♣자산운용은 ■■ ■■ 펀드를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상품으로 설계한 것임. 또한, ■■ ■■ 펀드 상품제안서에는 레버리지 설명이 없음. 반면 ♣♣자산운용이 설정한 다른 레버리지 상품을 보면 상품제안서에 레버리지를 크고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음. ■■ ■■ 펀드는 레버리지 사용 상품이 아님.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에 관한 결론을 말씀드리면 검사국은 판매사가 집합투자규약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지적하며 73억 원의 과태료를 예정하고 있음. 그러나 은행은 투자설명사항이 기재된 상품제안서를 교부하여 설명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였음. 집합투자규약을 교부할 의무가 법령상 명확하고 예측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집합투자규약을 교부하지 않은 점을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지적한 것은 자본시장법에 반할 뿐만 아니라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없는 제재로서 법치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것임. 이상과 같이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엄격하고도 명확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제재양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임. 검사국은 ■■ ■■ 펀드 x호~x호까지 xxx건의 판매 건에 대해 위반동기 '상', 위반결과 '중대'로 하여 합

계 73억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예정하고 있음.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설명서 교부의 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임. 은행은 상품제안서를 교부함으로써 설명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였기에 설명서 교부의무를 위반한다는 인식, 법위반의 인식이 전혀 없었음. 설령 생각을 달리하신다 하더라도 시간적·장소적 근접성과 행위의사의 단일성이 인정되는 하나의 행위이므로 xxx건이 아닌 1건의 과태료 처분이 적정한 것이 아닌가 싶음. xxx건을 별개의 행위로 인정할 경우에도 제재의 규정에 따라 법률상 최고한도인 10배 이내로 감경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녹취의무 및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의 제재양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겸허히 인정하고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였음. 일부 고령자에 대해 업무담당자의 법률 해석상 착오 내지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위반동기를 '하'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지 함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 금감원은 집합투자규약의 법적 성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보고자) 집합투자규약이라는 것은 법 제22항에 있다시피 집합투자기구의 조직, 운영 및 투자자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이고, 외관상으로는 투자신탁에 있어서 신탁계약을 말하고 있음.

○ (위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집합투자규약을 약관으로 본다는 것이 확실한지?

- (보고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집합투자규약을 약관심사가이드 라인이라는 제목 하에서 집합투자규약을 약관으로 해석하고 있음.

○ (위원) 대리인 측, 금감원 의견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 (진술인) 확인해 보겠음.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관으로 보는 것인지 하는 것과는 별개로 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해서 은행권에서 작성한 Q&A자료에 나와 있는 바를 보면,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2조에는 금융상품의 약관과 집합투자규약을 구별하고 있으며, 교부해야 될 서류로 금융상품계약서, 금융상품의 약관, 금융상품 설명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상품을 판매할 때 교부해야 될 서류로 집합투자규약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Q&A를 금융위원회에 질의했는데 금융위원회에서는 “집합투자규약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주었음.

○ (위원) 해당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자본시장법상 설명서란?’이라고 해서 적시해 놓으신 ‘(구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2항)’은 금융투자협회 규정인데, 개정 전의 규정인지?

▶ (진술인) 맞음. 상품판매 할 때 당시의 규정임.

- (위원) 현재는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지?
 - ▶ (진술인) 舊규정에 있고 지금 금소법이 되면서 규정 위치이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정이 있었음.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음.
- (위원)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람. ‘자본시장법 제91조(장부·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③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아래에 ‘교부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이라고 기술을 하셨는데, 금감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보고자) 법은 공모에 대해서는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고 그 투자자 간 증권의 유통이 많으므로 교부보다는 공시를 선택한 것임. 소수의 투자자만 참여하는 사모펀드에서는 정보접근성이 더 저하되므로 사모펀드에서는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교부를 선택한 것임. 공시의무를 주었다고 해서 공모가 더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모는 안전하게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투자자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채택한 것임.
 - ▶ (진술인) 사모펀드의 경우 판매사에게 집합투자규약을 교부하라는 것을 자본시장법이 선택했다는 취지로 들었는데, 저희는 그런 규정을 확인한 바가 없고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함.
 - (보고자) 저희가 집합투자규약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

적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서로서 충분하지 않은 설명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것이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집합투자규약 정도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임.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집합투자규약을 어디에서도 교부하라는 의무가 있다든지 하는 것을 법령상 찾아 볼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상품제안서가 곧 설명서라는 얘기도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음.

- (위원) 집합투자규약의 주요내용이라고 해서 그 아래에 보면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등 6가지를 적시해 놓고 있는데 집합투자규약의 주요내용으로 이 6가지가 맞는지 금감원에 질의드립니다.
- (보고자) 법무법인 측에서 제시한 이 주요내용은 신탁재산의 보관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운용과 관련된 부분을 적어온 것이기는 함. 그래서 투자대상자산이 어디까지이고, 또 자산운용의 제한이 어디까지 설정되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빠져 있음. 그다음에 신탁계약의 변경과 관련된 수익자총회의 동의 여부 그리고 보수와 수수료의 각각 상세 내용 그다음에 상환금 등의 지급절차에 대한 내용까지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 집합투자규약임. 지금 법무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신탁계약 중에서 신탁업자와 운용사 간에 해당 업무만을 적어온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음.
- (위원) 금감원 주장에 의하면 (주)신한은행은 내규 및 서식 등에서 집합투자규약을 교부하도록 규정, 특히 사용서식에서 교부해야 할 설명서로 집합투자규약과 제안서를 명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대리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진술인) 금감원이 지적하는 내용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집합투자규약이 아니고 약관이고, 그리고 그 약관의 내용도 집합투자규약이 아닌 수익증권 저축약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금 계약서류상으로 되어 있음. 우선, 집합투자규약이라는 것은 아까 금감원에서 말씀하셨듯이 집합투자기구. 즉, 펀드의 조직, 운용, 펀드 수익자에 대한 권리를 정하기 위해서 신탁업자와 자산운용사 간에 체결한 신탁계약임. 반면에 지금 금투업규정에서 설명서교부 의무 위반으로 지적하고 있는 설명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투자설명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교부할 의무를 말하는 것임. 금감원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집합투자규약의 일부 내용에는 투자설명사항이 포함될 수 있지만 그 집합투자규약을 작성하는 목적이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직 운용, 조직의 집합투자계약에 대한 수익자의 권리의무를 정하기 위해서 작성한 점이라는 것에서 양자가 구별됨.

○ (위원) (주)신한은행 내규 서식에는 집합투자규약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 (진술인) 없음.

- (보고자) 그와 관련해서 (주)신한은행이 PB 안내 게시글에서 사모펀드 판매시 신탁계약서를 교부할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음. 20xx년 x월xx일에 전국 PB에게

게시한 글임. '펀드 설명서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펀드설명서
은 반드시 투자설명서로 이행하고 고객에게 필히 교부', '이
때 사모펀드는 신탁계약서와 제안서로 설명하고 고객에게
교부', 그리고 밑에 박스에 기본 교부서류로서 '사모펀드는
신탁계약서 및 제안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음.

▶ (진술인) 지금 이 사건 펀드 판매한 시점은 20xx년 x월부터
x월까지이고, 지금 읽으신 그것은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금감원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자
고 보낸 내용임.

- (보고자)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것은 펀드와 관련된 (주)신한은
행의 기본적인 입장임. 담당부부장과 PB들의 질의사항에 대
해 잠깐 읽어드리겠음. 먼저, PB 쪽에서 "교부의무도 사실 없
는 것이죠? 그렇죠? 사모는,"이라고 하자 담당부부장 "교부는
해야죠. 특히, 약관은, 저희 신규 서류 중에 사모펀드 주요내
용 설명 및 약관 교부 확인서가 있어요.", "그것은 신탁계약
서와 다른 것인가요?", "아니, 신탁계약서=약관입니다.", "결
국 신탁계약서는 다 교부한 것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이런 형
태의 문자메시지를 저희가 파악한 것만 4건임. 그러니까 (주)신
한은행은 이미 신탁계약서와 약관을 동일한 것으로 보고 집
합투자규약은 교부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진술인) '집합투자규약을 교부해야 된다.'는 부분과 '설명
자료를 교부해야 된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이
되는 설명자료가 교부되었느냐, 이 부분은 다른 영역의
문제라고 생각됨. "설명서로서 교부해야 된다.", "집합투

자규약을 교부해야 된다.”고 해서 집합투자규약이 설명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음.

- (위원) ‘금융감독원도 집합투자규약과 설명자료 구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2020.7.29.)’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입장을 듣고 싶음.

- (보고자) 결국 설명자료로 설명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상품제안서로 충분한지, 아니면 집합투자규약이 병행해서 같이 나가야 되는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지, 어떤 것이 어떤 것을 대응한다, 대신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님. 이것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음. 그래서 은행이 자체 만든 설명자료라든가, 아니면 운용사가 제공한 설명자료가 집합투자규약과의 정합성을 살펴보라는 의미에서 나간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 ▶ (진술인) 2021년 4월20일에 개정된 법령에 의하더라도 핵심상품설명서와 집합투자규약은 구별하고 있음.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전에 제출된 보도자료에서도 설명자료와 집합투자규약은 구별하고 있고 그리고 금융위에 확인한 은행연합회의 Q&A에서도 상품설명서는 교부하도록 하지만 집합투자규약은 교부할 필요가 없다고 Q&A자료를 만든 바가 있음.

- (위원) 결국 핵심은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것임. 집합투자규약을 교부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의 형식적인 논리를 떠나서 투자설명사항이 제대로 설명서에 적시가 되어 있느냐는 것을 저희들이 논쟁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투자설명사항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 (보고자) 설명서라는 것은 법 제47조의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이므로 법 제47조에 있는 설명의무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 즉, 금융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조기상환 조건,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들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음.
- (위원) 상품내용, 투자구조와 성격, 수수료, 이런 내용들이 설명서에 전부다 적시가 되어 있었는지?
- ▶ (진술인) 그러함. 지금 금감원과 저희와의 시각 차이는 투자대상이 매출채권 이외에 메자닌이라든지, 사모사채 등 한없이 넓어질 수 있느냐, 두 번째, 투자전략으로서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시각차이가 있는 것 같음.
-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산운용에서 (주)신한은행에 제출한 집합투자규약에는 그런 내용들을 운용할 수 있다고 적시가 되어 있었는지?

- ▶ (진술인) 그 내용에 있어서도 주된 투자전략은 신용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이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부수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 신탁계약서, 집합투자규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표준약관처럼 광범위하게 기재되어 왔던 것이 관행임.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운용은 상품제안서를 보고 그 범위 내에서 운용을 해 왔음.

- ▶ (진술인)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레버리지에 대해서 본다면 상품제안서에는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집합투자규약에는 포괄적으로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3등급 상품임. 그렇게 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고 운용사가 3등급으로 지정을 했는데 금감원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면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상품은 3등급이 아닌 1등급임. 다시 말해서 3등급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상품제안서 잘 나타나 있음. 두 번째,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냐 아니면 금감원이 보듯이 이 펀드는 블라인드 펀드로서 모든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 펀드 자체가 ■■ ■■ 펀드이고 상품제안서 곳곳에도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되어 있고 ♣♣ 자산운용은 몇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확인을 해줬고, 그리고 x호~x호 판매 이후에 실제로 저희에게 보내온 신탁자산명세부라든지 운용보고서에는 하나같이 매출채권에만 투자되어 있고, 그러다가 20xx년 x월경에 ♣♣ 자산운용이 운용하고 있던 펀드에 엄청난 적자가 발생하니까 매출채권에만 투자하기

로 했던 그 상품제안서에 반해서 불건전 영업행위를 범한 불법운용 한 것을 가지고 이 상품을 규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시각임. 그런 점에서 상품제안서의 기재 자체가 오히려 올바른 것이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임.

- (위원) 상품제안서에는 펀드의 최저 가입금액이 3억 원으로 되어 있고 집합투자규약에는 1억 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판매는 3억 원 이상으로 하셨는지 1억 원 이상으로 하셨는지?

▶ (진술인) 1억 원으로 된 부분도 있음.

- (위원) 그러면 그것은 상품제안서대로 안 따르고 운용사의 의지와 관계없이 판매사가 집합투자규약을 따른 것인지?

▶ (진술인) 그것은 운용상품에 관한 것이 아님. 3억 원으로 처음에는 정했다가 운용사와 협의해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임.

- (보고자) 저희의 시각은 법무법인의 시각과 조금 다름. 법무법인은 모든 것을 ♣♣자산운용의 불법운용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이 사건의 핵심은 설명서 제공 의무와 관련해서는 판매사로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그대로 잘 전달하라는 의무이지, 설명의무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님. 두 번째, 주된 투자자산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범위까지 '주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상품의 핵심은 신용보험이 가입된 것들만 가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투자자로서는 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다 안전하겠지 하는 시각으로 접근했던 것임. 주지 않는 이상 투자자는 알 수 없었던 것임.

- (위원) 금감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집합투자상품 신규가입신청서'라는 것이 있음. 서식에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사모상품의 경우 약관 및 제안서)를 교부받았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약관이 집합투자규약인지?

- ▶ (진술인) 거기에서 얘기하는 약관은 수익증권저축약관을 의미함.

- (보고자) 집합투자규약임. (주)신한은행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고 그와 같은 관련한 증빙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음.

- ▶ (진술인) 저희가 이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표준서식을 작성한 사람과 면담을 했음. 이 표준서식을 작성한 사람은 펀드를 가입하는 단계별로 만드는 서류를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될까를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 생각했던 것은 공모펀드인 경우에는 '투자설명서 제공확인서'라는 명칭의 문서를 만들어서 투자설명서를 받았는지 확인을 받았는데 그 형식을 그대로 사모펀드에 만들다보니 투자설명서에 해당하는 것이 사모펀드에 없어서 '약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라는 문서를 만든 것임.

- (위원) '집합투자상품 신규가입신청서'에 적시한 약관이 집합투자규약이 아닌 수익증권저축약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람. 그리고 '집합투자상품 신

규가입신청서' 이것은 20xx년 ○○ 판매했을 때 만들어진 것인지?

▶ (진술인) 훨씬 전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내규에 보면 '펀드 가입고객에게는 집합투자규약과 수익증권저축약관이 적용 및 제공됨'이라고 해서 이 약관이 집합투자규약인지 수익증권저축약관인지? 금감원에서는 이 약관이 집합투자규약이라고 하였음. 그 옆에 수익증권저축약관이 별도로 있는데 '약관의 적용 및 제공'이 '내규 수신 업무기준 제5편(집합투자증권) 제4장(표준투자권유준칙 등) 제6절'에서 '1. 약관의 적용 및 제공' 여기에서 말하는 '약관'이 집합투자규약인지, 수익증권저축약관인지를 명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람.

▶ (진술인) 알겠음.

- (위원) ■■ ■■ 펀드 x호~x호를 제외한 20xx년에 판매한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서 다 집합투자규약을 교부했다고 금감원은 주장하는데, 맞는지?

▶ (진술인) x호~x호는 저희가 보통 본점에서는 상품에 대한 자료를 내부게시판에 게시함. x호~x호의 경우에는 게시를 안 했음. x호부터 게시한 것은 당시 담당자들이 교체가 되면서 기존에 담당자들이 했던 업무적인 부분들이 일부 달라졌을 수 있음.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게시를 한 것임.

- (위원) x호~x호까지는 게시를 안 했고 x호부터 xx호까지도 교부를 한 것이 아니라 게시를 한 것이라는 말씀인지?
- ▶ (진술인) 본점에서는 게시를 하게 되고 게시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이 현장에 전달돼서 교부가 이루어짐. x호부터 xx호까지도 실제로 PB들은 교부하지 않았음.
- (위원) 다른 사모펀드는 어떠한지?
- ▶ (진술인) 다른 사모펀드도 마찬가지로 교부하지 않았음.
- (위원) 그렇다면 다른 사모펀드는 게시는 했는지?
- ▶ (진술인) 게시는 하고, 실제 교부한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을 담당 PB들이 설명서로 생각하고 교부한 것은 아님.
- (위원) 건별로 무엇을 게시했고 안 했는지, 게시된 것 중에 교부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 (위원) 설명서를 작성해야 될 주체는 (주)신한은행인지?
- ▶ (진술인) 죄송하지만 한 가지 덧붙이면 이 운용사가 해당 펀드를 설계하고 직접 운용하는 당사자였기 때문에 해당 상품에 대해 상품제안서, 설명서를 만들어서 판매회사에게 전달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였음. 그래서 그런 내용에 따라서 2020년 7월 행정지도에도 그러한 내용이 기재

되어 있는 것임.

○ (위원)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 규정 제2-5조, 은행은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로서 설명의무 이행에 필요한 설명서를 자체 제작하여 내부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이 말이 맞는지?

▶ (진술인) 조항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주체는 판매회사가 아니고 금융투자회사임.

○ (위원) 그런데 금감원 자료에는 '은행은' 이렇게 들어가 있음.

▶ (진술인) 정확하게 제2-5조 제2항을 보시면 '금융투자회사는' 이렇게 되어 있음.

○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근거 규정에 의한 판매사의 상품설명서 작성의무는 운용사로부터 받아서 그냥 전달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것인지?

▶ (진술인) 그런 의미는 아님.

○ (위원) 그러면 판매사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만 설명을 해 주시고 근거 규정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람.

▶ (진술인)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운용사가 상품제안서를 판매회사에게 교부를 하면 판매회사는 그 상품제안서가 금투업 규정 제2-5조에서 말하는 투자설명서항을 제대

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함.

○ (위원)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것이 정확하게 상품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와 확인을 하시는 것인지,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람.

○ (참여자) 금감원의 주장에 근거해서 회사 측에 질문드림. 이 사건 ■■ ■■ 펀드 출시 담당 직원에 대한 조사 결과 그때 당시에 ■■ ■■ 펀드는 매출채권 외에도 메자닌, 파생상품, 타펀드 등의 자산에도 제한 없이 투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 설명자료 보면 전혀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인 것 같음.

▶ (진술인) 그러함. 전혀 알지 못했음.

○ (참여자) 그런데 금감원 조사 때는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임.

▶ (진술인)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진술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그 담당자에게 확인을 하겠음. 저희는 전혀 알지 못했음.

○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를 보면 주체가 '금융투자회사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판매회사는 투자매매업자 자격에 의해서 판매했기 때문에 '금융투자업자는'을 '은행은'으로 고쳐서, 은행이 투자매매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 (진술인)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술인이 퇴장함.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